



결실의 계절,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깃드시길 기원합니다.

본교에서는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인식 개선을 위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장애이해-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각 가정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학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— 장애인차별금지법

2008년 4월 11일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이 발효되었습니다.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돋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,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	<p>교육(제13조, 14조) 장애인의 입·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.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·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</p>
<p>이동 및 교통수단(제19조)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,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</p>	
	<p>괴롭힘의 금지(제32조)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,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.</p>

(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)

— 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

-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올바른 용어는 ‘장애인’입니다. 하지만,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‘사람아’, ‘인간아’하고 부르지 않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.
- 장애인을 보고 주춤하거나, 유심히 바라보지 않습니다. 또한,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좋지만, 장애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, 나의 호기심을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.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, 자연스럽게 대해 주세요.
-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“제가 도와드릴까요?”하고 먼저 물어봅니다.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한다면,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보고 도와줍니다.
- 대화할 때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,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.

큰 변화는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된다.



1968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'장애인 마크'

다소 뻣뻣해 보이는 팔과

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**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** 같은 모습.

이 장애인 마크에 문제를 느낀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伦(Sara Hendren)은 새로운 모습의 장애인 마크를 고안하였습니다.



앞을 향해 나아가려는
몸체



스스로 휠체어를 있는
힘껏 잡으려는 팔



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
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

유니버설 디자인

유니버설 디자인이라면 사람들이 제품, 시설,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
성별, 나이, 장애, 언어 등에 제약을 받지 않게 설계된 디자인을 말합니다.



위아래로 쉽게 내리는 레버 문고리



유아차, 휠체어 진입이 쉬운 경사로



높낮이가 다른 지하철 손잡이



손쉽게 빼 수 있는 플러그

2022. 10. 5.

군산진포초등학교장